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 기간의 종료,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해당 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을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동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감면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한도액에

따라 결정된다. 4.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별첨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표]에 따르며, 해당 표는

최신 고시를 반영하여 연 1회 이상 갱신한다. 제1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6 -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시간이 임의로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에 합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외자로 판정되어 급여자격이 상실된 경우

③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진단되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안내를 따르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 또는 장소를 위반한 경우

⑦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